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공공분양주택 무순위(사후)(7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858-74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국민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1.04.15.(목)	'26.06.01.(월)	'26.06.08.(월)	'26.06.11.(목)	'26.06.15.(월)	'26.06.18.(목)

1 공통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당첨된 동호수의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시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현물상태 기준으로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해제)로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1.(월)**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15.(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27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6.08.(월)	'26.06.11.(목)	'26.06.15.(월)	'26.06.18.(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미 린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https://www.lynn.co.kr))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미 린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https://www.lynn.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68,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단지내상가 C-102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A-1BL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68)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24개동 총 2,049세대 중 잔여 1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026.09.18.(금)까지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4년 2월 28일)
-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동호수는 계약 이후 해지(해제)세대로 현물상태로 계약하는 조건임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01	074.8800C	74C	1	108	2404
02	084.9600A	84A	4	108	1602
				109	601
				118	403
				123	2002
03	084.8600B	84B	6	101	1903
				102	1303
				108	1103
				110	2103
				110	2503
				120	1203
합 계			11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용자금 제외 금액	용자금(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입주 시 (2026-09-18)	
074.8800C	74C	1	5층이상	1	330,000,000	33,000,000	222,000,000	75,000,000
084.9600A	84A	4	5층이상	3	402,000,000	40,200,000	286,800,000	75,000,000
			4층	1	393,000,000	39,300,000	278,700,000	75,000,000
084.8600B	84B	6	5층이상	6	390,000,000	39,000,000	276,000,000	75,000,000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2026-09-18)	비고
74C	9,670,000	970,000	8,700,000	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 완료
84A	9,520,000	960,000	8,560,000	
84B	10,840,000	1,090,000	9,750,000	

※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공급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계약사항이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 완료)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2026-09-18)	비고
74C	2안(4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108동 2404호	7,000,000	700,000	6,300,000	LG
84B	1안(3대)	거실, 주방, 안방	102동 1303호	5,500,000	550,000	4,950,000	
84A	2안(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108동 1602호	8,500,000	850,000	7,650,000	
			109동 601호				
118동 403호							
108동 1103호							
84B			110동 2103호				

■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호	추가선택품목														무상 선택품목	합계
		현관중문	바닥타일	고급 주방특화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안방 불박이장	침실1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침실2 드레스룸	광파오븐	인덕션	식기 세척기	주방 패키지	가구 패키지1		
74C	108동 2404호	1,600,000	900,000	-	-	-	-	-	-	700,000	400,000	700,000	900,000	3,200,000	3,100,000	-	11,500,000
84A	108동 1602호	-	-	-	1,200,000	-	-	-	-	-	400,000	700,000	-	-	-	김치냉장고장	2,300,000
	109동 601호	1,600,000	-	-	-	-	-	-	1,100,000	-	400,000	700,000	900,000	5,200,000	3,500,000	일반수납장	13,400,000
	118동 403호	1,600,000	1,100,000	-	-	2,800,000	-	-	-	-	-	700,000	900,000	5,200,000	-	김치냉장고장	12,300,000
	123동 2002호	1,600,000	-	-	-	-	-	-	-	-	400,000	-	-	5,200,000	3,500,000	김치냉장고장	10,700,000
84B	101동 1903호	-	-	-	-	-	-	-	-	-	-	-	-	-	-	김치냉장고장	-
	102동 1303호	1,600,000	-	-	-	-	-	-	-	-	400,000	-	-	4,100,000	4,400,000	김치냉장고장	10,500,000
	108동 1103호	1,600,000	1,100,000	-	-	-	-	-	1,100,000	-	400,000	700,000	900,000	4,100,000	4,400,000	김치냉장고장	14,300,000
	110동 2103호	1,600,000	1,100,000	-	-	-	-	-	-	-	-	-	-	4,100,000	4,400,000	김치냉장고장	11,200,000
	110동 2503호	-	-	-	-	-	-	-	-	-	-	-	-	-	-	일반수납장	-
	120동 1203호	-	-	-	-	-	-	-	-	-	400,000	-	-	-	-	김치냉장고장	400,000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 시)	잔금 (2026-09-18)	비고
추가선택품목	세대별 해당 금액	10%	90%	-

- ※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www.lynn.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가 상기와 같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승계 거부시 계약불가)
- ※ **120동 1203호의 경우 계약 해지(해제) 이전 기존 계약자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부위 하자보수 불가)를 진행한 세대로 계약 전 세대 관리를 통해 현물상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매립 냉매배관이 거실, 안방에 기본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합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 본 아파트는 2024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선택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2026년 09월 18일입니다.**
- ※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실입주(입주증 발급 및 키보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분양대금은 계약자별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모계좌로 이전 후 관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공급금액과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의 입금계좌는 상이하오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계약에 수반되는 인지세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서류제출 일시 : **2026.06.15.(월) 10:00 ~ 16:00** [서류접수일 및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06.15.)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별도 안내드린 순번별 예비입주자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자 중 미계약 발생시 이후 순번별 예비입주자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증명서류(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6.18.(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당첨자 제출 서류 일체	본인	- 서류접수 기간에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자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 첨부 - 아파트 분양대금 1억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공통서류	본인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추후 통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6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p>기준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table border="1" data-bbox="309 1098 2051 1283">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임의 해지 시,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사업주체는 별도의 자금대여, 대출 등을 일체 알선하지 않으며, 신청인 자격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취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2026년 09월 18일까지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일자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관련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는 사업주체에서 허용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 매매 가능)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공동명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공동 사업주체 겸 시공사	
상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6, 406-3호 (보정동, 한솔프라자)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205211-0001385	110111-022221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1.04.1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lynn.co.kr>)]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68,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 단지내상가 C-102호

■ 분양 문의 : 031-858-7400